

|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|
| 문서번호 | 보육여성과-17230   |
| 결재일자 | 2016.6.15.    |
| 공개여부 | 대시민공개         |
| 방침번호 | 부구청장 방침 제370호 |

|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주 무 관  | 여성정책팀장       | 보육여성과장        | 복지환경국장         | 부 구 청 장       |
| 이준형    | 구은모          | 이용철           | 김유호            | 06/15<br>代오영수 |
| 협<br>조 | 감사담당관<br>구승희 | 행정지원과장<br>유희남 | 행정지원과장<br>인사팀장 | 代정종록<br>이용주   |



## 2016년 동작구 직장 내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

### 추진근거

-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(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)
-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평등 기본조례 제13조 (성차별 개선 등)
-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희롱 예방지침

### 추진내용

- 성희롱 고충사건 **부서장 책임제 운영**으로 초기대응 및 사후관리
-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**무관용의 원칙 적용**
- **5급 이상 관리자 특별교육 및 성희롱 예방 의무교육 실시**
- 성희롱 상시예방체계 구축 및 잘못된 조직문화와 인식 개선

복 지 환 경 국  
보 육 여 성 과

# 사전 검토사항

해당항목에 '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| 검 토 항 목        | 검 토 여 부  |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추진 근거         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법령 <input type="checkbox"/> 방침 <input type="checkbox"/> 별도규정 없음<br>(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)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업 추진<br>유 형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신규사업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기존사업<br><input type="checkbox"/> 일회성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계속사업 (    년)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예산 확보<br>사 항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신규 확보 필요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확보 완료<br>(국            , 시            , 구 4,000천원)<br><input type="checkbox"/> 비예산 사업  | 예 산 팀<br>협 조<br>(            ) |
| 이해관계인<br>유 무   | ○ 주 민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           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<br>○ 단 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           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타 자 원<br>활용가능성 | ○ 중앙부처 : 유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(            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<br>○ 서울시 : 유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(            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<br>○ 민간단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           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<br>○ 기업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           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홍 보<br>필 요 성   | ○ 홍보대상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           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<br>○ 보도자료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 | 홍보물심사<br>협 조<br>(            ) |

# 2016년 동작구 직장 내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

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, 피해자 보호 및 공정한 처리 등 성희롱 방지조치를 적극 시행하여 성희롱 없는 밝고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

## I 추진근거

- ☐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(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)
- ☐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평등 기본조례 제13조 (성차별 개선 등)
- ☐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희롱 예방지침

## II 필요성

- ☐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직원 **의무교육 실시**(연1회 이상)
  - 교육부진 기관에 대하여 관리자 특별교육, 점검결과 언론공표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에 반영
- ☐ **직장 내에서 문제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성희롱에 대한 감수성 향상 필요**
  - 전문강사에 의한 대면 집합교육을 통하여 성희롱, 성폭력의 범주이해 및 관점의 변화 유도
- ☐ **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처벌 강화 추세로 성희롱 방지조치 필요**
  -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희롱 예방지침」 개정 (2015.6.1.)
    - ⇒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천명 및 피해자 보호 원칙 강화
  - 「국가공무원법」 개정 (2015. 11. 19 시행)
    - ⇒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당연 퇴직 또는 임용 결격요건이 ‘금고형’에서 ‘300만원 이상의 벌금형’으로 강화

### Ⅲ

## 추진 방향

- ☐ 성희롱 고충사건 부서장 책임제 운영으로 초기대응 및 사후관리 철저
- ☐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적용
- ☐ 5급 이상 관리자 특별교육 및 성희롱 예방 의무 교육 실시
- ☐ 성희롱 상시예방체계 구축 및 인식 개선
- ☐ 성희롱 고충사건 사후처리 시스템 강화로 재발 방지

### Ⅳ

## 세부 추진계획

**성희롱**이란? (양성평등법 제3조제2항)

- ☞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
- ☞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

<성희롱 예시>

- ☞ 육체적행위(신체적 접촉 등), 언어적행위(음란한 농담, 외모에 대한 성적비유 등), 시각적행위(음란한 사진, 그림 등 제시 등),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(승진탈락 휴직 해고 등)

### 1

## 성희롱 고충사건 부서장 책임제 운영

- 내실있는 예방교육 자체 실시 : 연 1회, 1시간 이상, 이수율 100% 목표
  - 전 직원 (기간제 근로자, 공공근로, 사회복지무요원 등 포함)
- 고충사건 발생 시 사건 및 언론동향 보고 등 초기 대응 철저
- 피해자 보호, 비밀유지 등 사후 관리 철저
  - 피해자와 가해자간 2차 피해 문제소지 파악 후 업무공간 분리 등

## 2 성희롱 행위자 무관용 원칙

-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천명 (동작구 성희롱 예방지침 제4조)
- 고충사건 발생 시 행위자 직무배제 또는 전보, 업무공간 분리 등 조치
- 성희롱 비위행위자 인사 반영 및 인센티브 배제
  - 승진, 전보, 근무평정 등 인사관리에 반영, 국내·외 연수 등 각종 인센티브 배제

## 3 성희롱 예방 의무교육 실시

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전부개정(2015.7.1.시행)으로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희롱 예방지침」 개정(2015.6.1.)에 따라 **전문강사에 의한 성폭력 예방 대면교육 확대** 및 **고위직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 실시** 등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강화됨

### ○ 5급 이상 간부 특별교육 실시 : 1회

- 대 상 : 5급 이상 간부
- 시 기 : 2016. 6. 21.(화) 08:30
- 방 법 :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교육
- 장 소 : 기획상황실
- 내 용 : 성희롱 관련 법령 및 구체적 예시,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

### ○ 6급 이하 직원 대면교육 확대 : 3회

- 대 상 : 6급이하 직원 (행정인턴, 임시직, 계약직, 사회복지무요원 등 포함)
- 시 기 : 2016. 6.10.(금) / 6.14.(화) / 10월 중 (총 3회)
- 방 법 :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교육
- 장 소 : 구청 대강당
- 내 용 : 성희롱 관련 법령 및 구체적 예시,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,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,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그 외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

○ 부서별 자체교육 : 연중 수시

- 여성가족부 홈페이지([www.mogef.go.kr](http://www.mogef.go.kr))에서 시청각 자료 활용
- 부서장 책임하에 부서별 자체 교육 연중 상시 실시(2016. 6 ~ 11월 실시 완료)

○ 아르바이트 대학생, 공공근로 등 교육 : 업무 시작 전, 주관부서

## 4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및 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

###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운영

○ 설치장소 : 보육여성과 사무실(구청 별관 3층)

○ 상담원 지정 현황

- 인사 팀장 (행정지원과, 남), 성희롱방지 업무 팀장 (보육여성과, 여)

✓ 기관별 남·녀 각 1인 이상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하되, 인사 또는 복무담당자를 포함하여 지정 (2016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, 여성가족부)

✓ 인사이동으로 업무 담당자 변경 시 변경된 담당자를 상담원으로 지정

○ 기능 및 업무

- 우리 구 직장내 성희롱 및 성차별 사례의 접수·처리
-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, 부서 간 협조·조정에 관한 사항 등

○ 신청 방법 : 방문상담, 서면, 전화, 전자우편 등

- 고충 접수·처리 대장 및 성희롱 고충신청서의 작성·비치

### 성희롱 심의위원회 운영

○ 구성근거 :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희롱 예방지침 제11조

○ 위원구성

- 위원장(부구청장)포함 6명의 위원으로 구성
- 위원장 추천 3인, 공무원단체 추천 2인으로 구성

✓ 위원 중 1인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

✓ 성희롱 심의위원 외부 전문가 위촉 현황

- 김미순 (천주교성폭력상담소장, 전국성폭력상담소 협의회 공동대표)

- 임 기 : 당연직(재직기간), 위촉직(2년, 연임가능)
  - 제12대 심의위원 위촉기간 : 2015. 5. 13 ~ 2017. 5. 12
- 기 능 :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 등을 위한 심의
- 제12대 성희롱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

| 직명  | 성명  | 성별 | 부서        | 직위(직급)   | 비고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|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위원장 | 정연찬 | 남  | 부구청장      |          | 당연직                |
| 위원  | 안인수 | 여  | 상도1동      | 행정민원팀장   | 위원장추천              |
| 위원  | 박소주 | 여  | 복지정책과     | 복지조사관리팀장 |                    |
| 위원  | 이순기 | 남  | 부과과       | 재산1팀장    | 위촉직<br>공무원단체<br>추천 |
| 위원  | 정수용 | 남  | 의회사무국     | 전문위원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위원  | 김미순 | 여  | 천주교성폭력상담소 | 시설장      |                    |

### 고충상담원, 심의위원회 전문성 및 활성화

- 감사담당관 조사인권팀과 연계, 필요시 조사의뢰
- 관내 전문기관 (성폭력 상담소 등)과 긴밀한 협의 및 자문 추진
-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희롱 고충상담원 전문 교육 이수로 전문성 제고

## 5 상시예방체계 구축 및 인식개선 추진

- 성희롱 인식 및 사례 조직 모니터링 설문조사 : 11월 (이메일, 익명원칙)
- 성희롱 관련 조직문화 및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: 7월 (양성평등주간 행사시)
- 성희롱 예방관련 홍보 강화 : 성희롱 예방 홍보물 제작하여 직원 공유 및 배포

## 6 고충사건 사후처리 시스템 강화

### 성희롱 피해자 지원프로그램 운영

- 지원시기 : 피해자가 원하거나 전문가 및 성희롱 고충상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
- 지원내용 : 억압된 감정 표출, 자기 통제권 찾기 등 심리치료 및 상담
- 진행방법 : 개별 심리상담, 집단상담, 심신회복캠프 등 피해자별 전문화된 치유프로그램

- 지원기관 : 천주교성폭력상담소

###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등 사후관리

- 점검방법 : 유선 및 메일을 통한 상담 등 사후관리
- 점검내용 : 2차 가해 및 동료, 부서 내 갈등 여부, 심리상태 등

## V 소 요 예 산

### ■ 소요예산액 : 4,000천원

#### ○ 산출내역

- 강사비 : 500천원 × 4회 = 2,000천원
- 플래카드 : 100천원 × 2회(상,하반기) = 200천원
- 홍보물 제작 : = 1,800천원

### ■ 예산과목

- 여성복지향상, 여권신장,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, 일반보상금, 행사실비보상금
- 여성복지향상, 여권신장, 성평등의식 확산, 일반운영비, 사무관리비

## VI 행 정 사 항

### ■ 부서별 협조·지원 사항

- 전 부서(동) : 전 직원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(이수율 100% 목표)  
부서별 자체 교육 연중 실시 및 결과 제출(증빙자료 포함)
- 감사담당관(조사인권팀) : 성희롱 사건 조사의뢰 시 조사 협조
- 행정지원과(인사팀) : 고충상담, 성희롱 가해자 인사조치 등

### ■ 교육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

- 성희롱 방지조치 배점표[붙임1]에 의거 연내 실시한 추진실적을 공공기관 예방통합관리시스템[여성가족부]에 실적 입력·보고

붙 임 : 2016년 성희롱 방지조치 배점표



**[붙임] 2016년 성희롱 방지조치 배점표**

| 유형                    | 평가항목                    |   | 2016년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배점                       | 세부내용   |
| 계획 수립 (10)            | 성희롱 방지조치<br>연간 기본계획(10) |   | 10                       | 기본계획 미수립(0)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본계획 수립 (5)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예산반영 (+2)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관장 결재 (+3)  |
| 교육 실시 (70)            | 교육참여(33)                | 기관장 참석  | A,C: 5<br>B: 8           | 미이수 (0)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수 (5,8) *(B유형 및 고위직이 없는 경우 8점)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고위직 참석<br>(B유형 제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A,C : 3                  | 50~70% 미만 (1)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70~90% 미만 (2)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90% 이상 (3)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직원이수율   | 25                       | 50% 미만 부진기관 *(A유형에 한해 적용)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50~60% 미만 (15)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60~70% 미만 (18)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70~80% 미만 (20)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교육방법(30)                |   | 30                       | 50~90% 미만 (23)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90% 이상 (25)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 (집합)내부직원강의 (10)<br>② 시청각교육(집합) (10)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 사이버교육(이수확인가능) (15)<br>② 내부직원(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이수) 강의(15)<br>(집합)일반강사 교육 (20)<br>(집합)전문강사 교육 (30) |
|                       | 교육횟수(5)                 |   | 5                        | 1회 (3)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2회 (4)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3회 이상 (5)  |
| 만족도조사(2)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2   | 실시 (2)                   |  |
| 방지 조치 (20)            |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(5)          | 5   | 미수립 (0)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수립 (3)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여발법 시행규칙 제3조 모두 반영 (+2)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고충상담 창구 및 고충상담원 지정(5)   | 5   | 고충상담 창구 설치 (2)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고충상담원 1인 또는 특정성만 2인 (+2)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고충상담원 남녀 각1인 이상 (+3)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고충상담원 전문교육(5)           | 5   | 전원 미이수(0)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고충상담원 중 50% 이하 이수 (2)    |  |
| 고충상담원 중 50% 초과 이수 (3)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(5)    | 5                       | 금년내 1인 이상 이수 (+2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구성 (2)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외부전문가 위촉 시 (+1)<br>징계위원회에 고충심의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참여 (+2)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가·감점 (10)             | ① 신규자 교육<br>② 비정규직 교육   | 4<br>(각 2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% 미만 (0)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50~70% 미만 (1)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70% 이상 (2)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추천 교재 사용                | 2   | 사용 (2)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교육홍보자료제작                | 2   | 자체제작 (2)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소속·산하기관점검(B유형 제외)       | 2   | 점검실시 (2)                 |  |
| 우수사례 제출               | 2                       | 제출 (2) *(소속·산하기관이 없는 경우 4점)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감점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-2점   | 2월말 이후 제출                |  |
| <b>합 계</b>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<b>100점 (가감점110점)*</b>   |  |